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0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쓰레기 봉투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와 불우한 소년˙소녀가장, 리˙ 반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값 감면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것 임

2. 개정근거

○ 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리˙ 반장 사기앙양 대책강구 (내무부지기 13120-72, ('95. 2. 7호))

○ 저소득층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 비용감면 확대(환관 67501-362('95. 2. 17호))

3. 주요골자

가.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시 거리제한(50미터)을 폐지하여 봉투구입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함.(안 제11조)

나. 생활이 어려운 소년˙소녀가장과 리˙ 반장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함.(안 제18조)

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1조 (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) 제 3항중 " 판매소간 거리(50미터이상)" 를

"판매소간거리" 로 한다.

제 18조 (수수료의 감면) 제 1항중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" 를 "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, 소년소녀가장, 리.반장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 11조 (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군수는 제 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. 인구수 판매소간 거리(50미터 이상),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	제 11조 (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 판매소간 거리 --.
제 18조 (수수료의 감면) ① (생 략) 1.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 2. (생 략) ② (생 략)	제 18조 (수수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1.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, 소년·소녀가장 및 리·반장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검 토 보 고 서

□ 조례명

○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□ 주요 내용

○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(안 제 11조)

- 현행 : 판매소간 거리 (50m 이상)
- 개정 : 50m 이상 거리 삭제

○ 수수료의 감면 (안 제 18조)

- 현행 :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→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 및 군수가 정하는 자
- 개정 :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확대 → 소년.소녀가장 및 리.반장 추가

□ 개정 사유 (필요성)

○ 쓰레기 봉투 판매소간 제한거리 (50m 이상)을 폐지하여 봉투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

○ 생활이 어려운 소년.소녀가장, 리. 반장에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공하여 수수료 감면으로 생활의욕 고취 및 사기 앙양 도모키 위함.

□ 검토 결과 (의 견)

○ 본 조례 개정(안)은 중앙 및 도에서 시달된 (안)을 토대로 입법예고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고,

○ 내용에 있어서도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이 어려운 소년.소녀 가장들의 생활의욕 고취 및 리.반장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,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됨.